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입장권등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화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99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9. 9.

다. 회 부 일: 2024.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암표를 구매한 경험 있다고 답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려는 일반 국민의 큰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공연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매매하여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수법인 ‘암표 거래’의 방법이 나날로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임.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에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암표 업체들이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편법을 쓰며 감시망을 벗어나 암표 시장을 확장하고 있음.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의 티켓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나아가 불법 행위로 탈취된 개인정보가 중고거래 사기 등 2차 범죄에도 활용되면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입장권등의 판매단계에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암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연기획사, 예매처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인식, 안면 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는 바, 공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은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도입하여 암표 목적의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는 자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입장권등의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1. ~ 4. (생략) ③ ~ ⑤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u>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¹⁾ 제4조의2제1항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동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애플 신고게시판 건수가 2020년 359건에서 2023년 2,161건으로 증가²⁾하는 등 입장권등 부정판매의

-
- 1)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애플 신고게시판은 신고된 애플 의심 사례를 티켓 예매처에 송부하여 소명요청 및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애플 신고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8.
신고건수	359건	785건	4,224건	2,161건	1,364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³⁾ 등 암표 거래 수법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최근 얼굴 인증 등 생체 인증 방식을 활용해 본인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예매 서비스 등 공연 판매사·판매 위탁사에 의한 기술적 조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암표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사전에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현재 공연기획사나 티켓 예매처 등이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회원 이용 약관 강화, 부정판매 게시물 모니터링, 신고 및 포상 제도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관리적 조치를 수행하고 있고,

소규모 공연 제작사 등의 경우 인력 및 제작 비용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

3) 대리 티켓팅이란 암표 거래 업체가 구매자의 아이디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받아 구매자의 계정으로 직접 예매를 해주는 방식이고, 아이디 옮기기란 이미 암표 거래 업체가 확보한 입장권 등을 취소함과 동시에 구매자의 계정으로 예매하는 방식을 의미함.

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부정판매를 방지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의 경우, 개인의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⁴⁾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도난·유출·위변조 등 안전성 조치가 수반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공연장 입장 시에 본인 확인을 할 경우 관람자에게 필요한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⁵⁾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판매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특정 영역의 조치에 한정하지 않고 관리적 조치 등 필요 조치를 대통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위탁자가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⁶⁾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문 의 처

02)6788-5379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745호)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3804호)